**정부 정책 설명서**

**1조: 목적**

수도 차단 보호법(Cal. Health & Safety Code §§ 116900 – 116926)에 따라 리틀록 크리크 관계지역은 비급여인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기 전에 특정 절차가 포함된 서면 정책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. 또한,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최소 육십(60) 일 이상 연체된다면 계좌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

**2조: 정책 설명**

주거용 수도 서비스 계좌에서 육십(60) 일 이상 연체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수도 차단 보호법에 따라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 본 정책은 현재 체납 계좌를 알려주며 미납으로 인해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지역 고객에게 알려주는 안내 역할을 합니다. 본 정책이 다른 지역 법률, 규제, 정책과 상충하는 경우, 이 정책을 우선합니다. 본 정책은 비주거용 수도 서비스 계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.

**3조: 결제 약정**

고객은 해제 통지를 받은 후에만 계좌 지급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지역 단독 재량으로 연장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연장은 해제 통지의 최종 마감일 이후 칠(7) 일을 넘길 수 없습니다. 미지급 어음이 4개 이상인 계좌는 연장이 허용되지 않습니다.

해제 통지가 도착한 다음 고객은 분할 납부 일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 고객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것을 피하고자 해당 지역 단독 재량으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납부 일정에서는 십이(12) 개월 안에 연체한 금액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. 본 제 3조에 따라 연장이나 납부 일정을 교부받은 고객이 연장한 날짜나 납부 일정에서 정한 날짜에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다면, 지역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# 4조: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는 특별한 의료 및 재정 상황.

## 조건

다음 세(3)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다면 해당 지역에서는 수도 서비스를 중단하지 않습니다.

* 1. 면허를 지닌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수도 요금을 연체한 고객, 또는 고객의 세입자에게 수도 서비스를 중단한다면 대상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, 대상자의 건강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증명서를 해당 지역에 제출한 경우에는 주거용 수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.
  2. 고객은 지역의 일반 청구 주기 안에 거주 서비스를 결제할 수 없습니다.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일반 청구 주기에 금전적인 결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.
     1. 고객의 가족 구성원 중에서 현재 CalWORKs, CalFresh, general assistance, Medi-Cal, California SSI/SSP, 여성 및 유아를 위한 캘리포니아 특수 영양 보충 프로그램의 수혜자인 경우.
     2. 위증 벌금 하에 고객이 연방 빈곤 수준의 이백 퍼센트(200%) 미만임을 신고한 경우. 고객이 신고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제공합니다.
  3. 고객이 연체한 요금에 대하여 연장, 기타 납부 일정에 해당 지역과 서면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있습니다. 해당 지역은 계약서에 명시한 납부 일정의 이용 약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어떠한 경우에도 서면 계약에서 이루어지는 연장은 십이(12) 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
## 자격 검증에 대한 고객 증명 및 지역의 검토

고객은 4.A조에 있는 자격 요건에 만족한다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. 고객에게 서류를 받은 지역은 칠(7) 일 안에 서류를 검토해야 합니다. (a) 지역에서 선택한 이용 약관을 고객에게 알리고 해당 납부 일정 계약서에 고객의 서명을 요구합니다. (b) 고객에게 추가 정보를 요청합니다. (c) 고객이 자격에 충족하지 않음을 알립니다.

## 미준수

4조에 따라 납부 계약을 승인받지 못한 고객이 육십(60) 일이 지나도록 다음 중 하나를 수행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은 수도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.

(i) 납부 일정에 따라 내야 하는 금액을 지불합니다. (ii) 납부 일정이 유효한 동안 현재의 수도 서비스 요금을 지불합니다. 서비스 중단 최소 오(5) 영업일 전에 해당 지역은 서비스 주소지에서 눈에 잘 띄고 잘 보이는 위치에 서비스 중단 최종 통지를 게시해야 합니다. 5조에 따라 최종 통지는 고객이 지역에서 조사나 검토를 받을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.

# 5조: 청구서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이의 제기 절차

## 청구서에 대한 이의 제기 또는 이의 제기 절차.

수도 요금 청구서가 정확한지 의심된다면 진술 고객은 분쟁 청구서를 받고 십(10) 일 안에 이의 제기를 시작하거나 청구 금액에 대한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서면 이의 제기에는 이를 지지하는 정보나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.

재무 관리자나 회계 관리자는 모든 이의 제기와 조사 요청을 검토해야 합니다. 이러한 검토에는 고객이 미지급 잔액에 대하여 후불 결제나 분할 납부 일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포함됩니다. 조사, 이의 제기가 계류 중이거나 항소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수도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습니다. 해당 지역 단독 재량으로 적절하지 않은 이의 제기나 조사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. 그러한 이의 제기나 요청은 항소의 대상이 아닙니다.

## 재무부 항소

불만을 제기한 사람이 회계 관리나 재무 관리자의 결정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재무 책임자의 결정 십(10) 일 안에 재무 이사회에 서면으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항소를 제출한 다음에 이사회는 항소 관련하여 십(10) 일 안에 항소 관련 내용을 고객에게 서면으로 답변해야 합니다.

위원회 서면 답변에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해당 답변을 받은 날에서

십(10) 일 안에 위원회에 회의를 요청하여 답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회의는 가능한 한 신속히 진행되어야 하며, 불만을 제기한 사람은 시간과 장소에 대하여 서면 통지를 받아야 합니다. 회의 후 위원회는 십(10) 일 안에 불만을 제기한 사람에게 결정에 대하여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.

# 6조: 지역 연락처 정보

요금 미납으로 인한 서비스 중단을 피하고자, 그리고 그 외 다른 사유로 수도 청구서와 관련된 질문과 도움이 있다면 일반 업무 시간에 661-944-2015나 [lortiz@lrcid.com](mailto:lortiz@lrcid.com)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. 일반 업무 시간은 월요일에서 목요일, 7 a.m.에서 5:30 p.m.입니다. 금요일과 그 외 휴일에는 휴무입니다.